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-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### ◇ 제정이유

- 일정품질 이상의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·육성하여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·분석 품질을 향상시키고, 중소기업의 R&D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

### ◇ 주요내용

#### 가. 진단기관의 지정 요건(제2조)

-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

#### 나. 진단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절차(제3조)

-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수반되는 절차 및 서식을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규정

#### 다. 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(제4조)

- 진단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

#### 라. 지정 및 지정서 교부(제5조, 제6조)

-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후 지정서 교부를 규정

#### 마. 관리감독 및 실적보고(제7조, 제8조)

- 산업재산권 진단업무의 집행과 직접 관련된 지도·감독 규정

#### 바. 협의회 구성(제9조)

- 진단기관들 간의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규정